

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
일부개정법률안  
(윤건영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9225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2.

발 의 자 : 윤건영 · 양부남 · 신정훈  
윤준병 · 한준호 · 차지호  
이광희 · 김문수 · 정태호  
김성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·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.

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4조 등).

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
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광역시”를 “통합특별시·광역시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광역시장”을 “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p>제4조(설립 및 등기 등) ① 특별시·<u>광역시</u>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 <p>제5조(정관) ① (생략)</p> <p>②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·<u>광역시장</u>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| <p>제4조(설립 및 등기 등) ① ----<br/>---<u>통합특별시·광역시</u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정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br/>-----<br/>---<u>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</u>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|